



제 1092 호

2013년 2월 25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3-	339호	금연클리닉사업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 입찰 공고 2
○ 공고 제2013-	348호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5
○ 공고 제2013-	350호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 17
○ 공고 제2013-	3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19
○ 공고 제2013-	3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6
○ 공고 제2013-	359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고 47
○ 공고 제2013-	363호	소액수의(에이즈 및 성병예방 물품구입)견적제출 안내 공고 66
○ 공고 제2013-	364호	소액수의(감염병, 식중독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견적제출 안내 공고 69
○ 공고 제2013-	3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72
○ 공고 제2013-	366호	장도포대지 무단적치물 철수촉구 및 행정대집행(2차)계고 공고 98
○ 공고 제2013-	367호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공고 99
○ 공고 제2013-	369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103
○ 공고 제2013-	3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113
○ 공고 제2013-	372호	공인폐기 공고 138
○ 장수서창동 공고 제2013-	12호	장수서창동 제7,8,10,11,21통장 위촉 공고 139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39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금연클리닉사업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
- 나. 구입물품 : 붙임 시방서 참조
- 다. 설계금액 : 64,825,000원
-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 마.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 사. 납품조건 : 의약품 유효기간은 요청일로부터 18개월 이상
 - ※ 단, 사용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유통기한이 1/2이상
-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3. 02. 19(화) 11:00 ~ 2013. 02. 26(화) 11:00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02. 26(화) 12: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차. 발주부서 및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유희근(☎032-453-5102)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입찰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32-453-5102 유희근)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남동구 재무과(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48호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구 논현동 767-4번지 일원에서 시행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3. 02. 2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명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내역

구 분	종전토지 지적공부(폐쇄)			확정토지 지적공부(시행)		
	필지수	면적(㎡)	비고	필지수	면적(㎡)	비고
논 현 동	201	2,240,331	지번별조서 참 조	252	2,235,345.1	지번별조서 참 조
고 잔 동	8	141,368	지번별조서 참 조	1	141,091.7	지번별조서 참 조
합 계	209	2,381,699	지번별조서 참 조	253	2,376,436.8	지번별조서 참 조

4. 지적공부 확정 현황
 - 토지대장 : 253필지(2,376,436.8㎡)
 - 지 적 도 : 349도곽(축척 1/500)
 - 경계점좌표등록부 : 253필지(2,376,436.8㎡)
5. 시 행 일 : 2013. 02. 20.
6. 공고기간 : 2013. 02. 20. ~ 2013. 03. 04.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62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 번 별 조 서(폐쇄,확정)

사업명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동 명	폐 쇄				동 명	확 정				비 고
	지 번	지목	면 적(m)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적(m)	소 유 자	
논현동	179-17	전	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1	대	8,430.5	(주)한화	
논현동	179-32	제	5,63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2	중	1,116.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34	구	46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3	대	1,982.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36	유	6,03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4	학	12,71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38	유	35,7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5	학	10,990.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39	염	339,86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6	중	1,980.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42	잡	21,54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7	잡	1,602.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66	제	40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8	공	247,750.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67	구	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9	도	3,619.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68	제	1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10	도	1,609.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69	제	4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11	도	3,647.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70	제	25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12	도	260.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72	유	63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8-13	도	130.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100	염	88,7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9-1	대	20,991.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101	제	11,14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9-2	대	683.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102	구	3,62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9-3	대	1,109.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103	제	4,48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9-4	대	1,93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79-107	염	11,22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9-5	공	8,510.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194-13	답	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9-6	공	2,470.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2-1	답	19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0-1	대	34,96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3-6	답	40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0-2	대	80,31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4-2	전	3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0-3	공	1,531.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5-2	답	2,7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0-4	도	3,349.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7	전	60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0-5	공	5,91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7-1	장	55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1-1	대	1,908.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8-1	전	80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1-2	대	1,969.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8-2	전	45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1-3	도	937.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8-3	전	1,2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2-1	차	3,158.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8-4	장	41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2-2	도	513.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8-5	장	96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3-1	대	2,01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8-6	장	65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3-2	대	2,832.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9	대	83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4-1	대	978.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209-2	장	17,16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4-2	대	1,005.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	대	171,88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4-3	대	1,005.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	잡	5,54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4-4	대	1,735.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	장	4,62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4-5	차	1,30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	잡	9,82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4-6	도	303.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	대	44,47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5	공	293.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	대	2,60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6-1	대	1,380.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5	임	29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6-2	대	1,379.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6	대	53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6-3	대	1,379.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7	대	7,42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6-4	대	1,417.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8	임	10,47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6-5	대	1,399.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9	전	5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6-6	대	1,418.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0	전	49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6-7	도	420.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1	도	8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6-8	도	632.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2	전	39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7-1	대	7,955.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3	도	20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7-2	공	429.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4	도	1,2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7-3	공	42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5	도	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8	공	45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6	도	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9-1	대	38,918.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7	전	1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9-2	공	583.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8	임	13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9-3	차	5,162.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29	잡	3,36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9-4	공	8,447.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0	도	32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49-5	공	3,230.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1	대	52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0-1	공	8,010.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2	도	50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0-2	차	2,580.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3	도	78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0-3	공	3,460.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4	대	3,971	(주)한화	논현동	751-1	대	18,939.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5	잡	69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1-2	대	3,47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6	도	4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1-3	대	3,366.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7	잡	59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1-4	공	1,027.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8	대	1,20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1-5	공	78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39	도	3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1-6	공	6,445.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0	대	8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2-1	대	86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1	대	3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2-2	대	882.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2	대	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2-3	대	848.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3	대	220	(주)한화	논현동	753-1	대	997.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4	대	3,7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3-2	대	927.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5	대	22,88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3-3	대	96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6	대	24,50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3-4	대	962.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7	잡	7,5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4-1	대	819.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8	잡	76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4-2	대	977.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49	대	56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4-3	공	3,718.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0	임	20,29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4-4	차	4,391.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1	대	145,13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5-1	대	67,126.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2	유	2,76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5-2	학	10,484.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3	도	66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5-3	학	11,200.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4	장	1,09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5-4	대	82,49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5	대	77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5-5	공	1,688.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6	유	16,64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5-6	공	6,277.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7	대	2,41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5-7	공	10,63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8	도	50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5-8	공	3,458.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59	도	7,19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6-1	대	55,724.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0	잡	3,65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6-2	잡	1,16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1	잡	148,1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6-3	대	505.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2	대	40,0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6-4	잡	205.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3	대	1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6-5	공	34,506.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4	대	23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6-6	공	5,00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5	대	31,88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7-1	대	49,14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6	천	3,08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7-2	공	1,92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7	도	23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7-3	공	4,47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8	잡	72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7-4	도	2,366.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69	대	15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1	대	320.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0	유	39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2	대	32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1	답	1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3	대	327.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2	답	14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4	대	327.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3	잡	51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5	대	328.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4	도	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6	대	33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5	도	2,5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7	대	33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6	잡	40,07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8	대	343.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7	잡	1,57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9	대	342.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8	천	7,82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10	대	333.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79	전	4,25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11	대	332.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0	잡	1,7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12	대	327.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1	잡	1,04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13	대	327.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2	잡	3,02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8-14	대	327.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3	도	26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1	대	348.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4	잡	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2	대	348.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5	잡	35,1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3	대	348.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6	잡	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4	대	348.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7	잡	32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5	대	348.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8	답	1,49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6	대	348.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89	잡	2,15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7	대	348.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0	답	1,30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8	대	341.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1	잡	2,0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59-9	공	2,502.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2	잡	24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0-1	대	40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3	도	25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0-2	대	412.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4	잡	74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0-3	대	412.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5	잡	70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0-4	대	412.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6	잡	21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0-5	대	412.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7	잡	1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0-6	대	41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8	잡	7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0-7	대	412.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99	잡	1,41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0-8	공	2,653.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0	답	1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1	대	34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1	답	6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2	대	341.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2	답	11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3	대	347.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3	잡	2,12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4	대	347.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4	임	12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5	대	347.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5	임	15,34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6	대	347.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6	잡	1,27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7	대	347.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7	잡	49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8	대	342.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8	잡	3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9	대	340.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09	잡	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10	대	347.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0	임	4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11	대	347.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1	잡	1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12	대	347.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2	도	65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13	대	348.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3	도	3,24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1-14	대	347.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4	임	3,09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2-1	학	12,857.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5	임	92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2-2	공	3,080.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6	잡	20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2-3	공	186,437.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7	임	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3-1	공	125,024.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8	잡	2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3-2	공	81,90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19	대	1,81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3-3	도	2,657.2	남동구	
논현동	733-120	잡	1,90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3-4	공	35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1	잡	4,3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3-5	공	2,07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2	잡	1,03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4-1	대	2,352.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3	도	10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4-2	대	2,239.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4	대	26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4-3	대	4,157.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5	대	34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4-4	대	10,776.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6	대	11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5-1	대	39,408.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7	도	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5-2	학	11,461.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8	대	85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5-3	중	1,642.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29	대	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5-4	공	1,517.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0	잡	261,60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6-1	대	76,92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1	잡	5,01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6-2	대	1,906.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2	도	40,84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6-3	대	1,04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3	제	1,05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7-1	대	14,720.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4	유	16,55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7-2	학	15,393.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5	유	49,43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7-3	학	10,196.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6	잡	56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7-4	대	9,432.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7	잡	727	(주)한화	논현동	767-5	공	3,503.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8	잡	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7-6	공	75,771.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39	잡	2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7-7	도	1,168.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0	잡	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8-1	대	216.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1	잡	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8-2	대	222.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2	잡	1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8-3	대	22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3	잡	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8-4	대	222.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4	잡	1,42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8-5	대	22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5	답	7,1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8-6	대	222.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6	전	1,3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9-1	대	211.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7	답	5,93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9-2	대	22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8	전	3,85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9-3	대	224.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49	전	4,16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9-4	대	223.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50	대	3,96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69-5	대	210.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51	장	27,22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1	대	219.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52	장	1,40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2	대	219.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53	도	2655	남동구	논현동	770-3	대	22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56	대	3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4	대	22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59	잡	2,78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5	대	22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33-166	답	3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6	대	219.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45-2	임	59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7	대	219.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46-4	임	4,26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8	대	22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46-6	임	10,47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9	대	22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46-7	임	3,96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0-10	대	225.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1	임	52,86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1	대	241.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2	임	76,54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2	대	24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3	임	17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3	대	247.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4	임	2,528	(주)한화	논현동	771-4	대	247.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5	임	3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5	대	247.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6	임	46,87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6	대	247.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7	임	49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7	대	247.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8	임	29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8	대	241.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9	임	119	(주)한화	논현동	771-9	대	242.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10	임	39,08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10	대	248.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11	임	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11	대	247.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12	임	75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12	대	248.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13	임	93,31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13	대	248.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14	임	1,09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1-14	대	247.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15	임	2,67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2-1	대	236.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산106-16	임	99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2-2	대	236.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510-5	잡	1,47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2-3	대	236.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511-1	잡	1,60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2-4	대	236.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513	잡	60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2-5	대	236.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515	잡	6,39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2-6	대	236.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519-19	잡	23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2-7	대	236.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569-5	도	23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2-8	대	22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586-23	대	66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3-1	대	52,270.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산3-1	임	130,1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3-2	대	966.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3-3	차	1,444.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3-4	공	1,513.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3-5	공	2,244.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4-1	대	101,46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4-2	학	10,146.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4-3	대	1,098.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4-4	공	1,591.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4-5	공	3,733.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5	공	60,48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6	도	1,171.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7	도	662.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8	도	808.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79	도	3,857.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0	도	11,854.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1	도	9,678.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2	도	1,299.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3	도	2,556.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4	도	668.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5	도	15,602.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6	도	8,105.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7	도	61,216.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8	도	8,519.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89	도	1,617.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0	도	2,863.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1	도	2,445.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2	도	14,009.3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3	도	14,484.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4	도	8,708.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5	도	12,461.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6	도	2,957.9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7	도	1,566.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8	도	3,079.6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799	도	29,755.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0	도	203.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1	도	1,708.8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2	도	385.0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3	도	3,012.5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4	도	1,789.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5	도	5,279.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6	도	4,459.2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7	도	2,165.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8	도	15,025.1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논현동	809	도	50,738.4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고잔동	990	공	141,091.7	(주)한화 (주)화인파트너스	
합계	209필		2,381,699			253필		237,643.8		-5,262.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50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 구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사고 및 범죄이용 가능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코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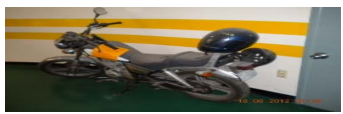
1. 공 고 기 간 : 2013. 02. 20 ~ 03. 12 (20일 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 : 2013. 03. 12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이륜차 15대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3년 02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연번	소유자	차량 번호	차명	방치장소	보관장소	차량사진
2010-489	미 상	미 상	이륜차	만수4동 2번지 만수주공단지 119동 7,8라인 1층계단밑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275	미 상	미 상	이륜차	구월3동1402-2호 연세부동산 앞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279	미 상	미 상	이륜차	구월3동1374-14호 앞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294	미 상	미 상	이륜차	간석3동113번지 3호 엘리 유플러스 지하1층 주차장 내(사유지)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309	미 상	미 상	이륜차	간석4동238-5호 앞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312	미 상	미 상	이륜차	만수3동865-19호 골목길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315	미 상	미 상	이륜차	구월동145-2호 김스클럽지하 주차장 입구 옆 공중전화 옆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318	미 상	미 상	이륜차	간석동222-7호 대명빌라 내 (사유지)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330	미 상	미 상	이륜차	만수5동913-9호 앞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32	미 상	미 상	이륜차	간석3동37-118호 웅빈 하이츠빌라 주차장 내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50	미 상	미 상	이륜차	구월동 예술화관역 4번 출구 앞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377	미 상	미 상	이륜차	간석4동394-6호 삼도빌라 다 동 앞 도로변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410	미 상	미 상	이륜차	주원 공영주차장 (간석4동 371-2) 내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442	미 상	미 상	이륜차	구월1동 1158-7호 원룸 앞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453	미 상	미 상	이륜차	시청 지하철 9번출구 앞 주차 구획선 내(주원고개방향 왼쪽)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2. 2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후 2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규정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안 제9조제4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신설 (안 제10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삭제 (안 제10조제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규정 삭제 (안 제11조 제2항)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및 위원 위촉 관련 기존 『구청장』을 『동장』으로 개정 (안 제18조, 제20조 2항 및 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부칙 신설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5,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의견수렴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2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후 2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규정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안 제9조제4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신설 (안 제10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삭제 (안 제10조제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규정 삭제 (안 제11조 제2항)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및 위원 위촉 관련 기존 『구청장』을 『동장』으로 개정 (안 제18조, 제20조 2항 및 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부칙 신설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위원”을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제3항 중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를 “위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구청장”을 각각 “동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2013년 9월 5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20조에 따라 2013년 6월 9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3년 재위촉된 위원은 연임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u>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u>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생략) ② 구청장은 <u>위원</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③ <u>보궐 위원</u>은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해당 지역회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으며, 제1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생략) ② <u>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③·④ (생략)	제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u>-----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③ ----- <u>위원</u>은 ----- ----- ----- -----. 제11조(위원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 <u>구청장</u>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
제18조(설치) <u>구청장</u>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	제18조(설치) <u>동장</u>----- ----- -----

현행	개정안
의”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에서 <u>구청장</u>이 위촉한다. ③ <u>구청장</u>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④ ~ ⑧ (생략)	-----.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동장</u>-----. ③ <u>동장</u>-----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2.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하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내실성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내용에 따라 3개의 장으로 분류 → **장 신설**
(제1장 총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제3장 자원봉사센터 위탁)
- 센터 소장의 명칭을 센터장으로 변경 → **명칭변경**
- 센터의 대표자를 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 → **회장조항 삭제**
-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이관 → **삭제**

- 센터의 조직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 → 1개팀 증설(안 제4조)
-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설(안 제5조)
- 연2회 직원 근무평정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확산 → 신설 (안 제6조)
- 직원의 임용 및 보수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규정에서 별정직 공무원
규정으로 변경 → 수정(안 제6조 ~ 7조)
- 징계에 관한 사항 추가 → 신설(안 제9조)
- 겸직제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추가 → 신설(안 제10조)
-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규정 마련 → 신설(안 제19조 ~ 23조)
- 인사(징계), 보수,복무,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 별도규정 운영 → 신설(안 제24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453-2502, FAX : 453-2509)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하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내실성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내용에 따라 3개의 장으로 분류 → **장 신설**
(제1장 총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제3장 자원봉사센터 위탁)
- 센터 소장의 명칭을 센터장으로 변경 → **명칭변경**
- 센터의 대표자를 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 → **회장조항 삭제**
-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이관 → **삭제**
- 센터의 조직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 → **1개팀 증설(안 제4조)**
-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설(안 제5조)**
- 연2회 직원 근무평정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확산 → **신설 (안 제6조)**
- 직원의 임용 및 보수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규정에서 별정직 공무원 규정으로 변경 → **수정(안 제6조 ~ 7조)**
- 징계에 관한 사항 추가 → **신설(안 제9조)**
- 겸직제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추가 → **신설(안 제10조)**
-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규정 마련 → **신설(안 제19조 ~ 23조)**
- 인사(징계), 보수,복무,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 별도규정 운영 → **신설(안 제2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하여 「자원봉사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제3조(직원의 정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고 그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조직체계) 센터의 조직체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센터장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의 소관 부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나 사회저명인사 3명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공무원 및 구의원은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인사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요구하는 사항

⑥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직원의 임용) ①직원은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센터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선임하며, 센터의 팀장 및 운영요원은 공개 경쟁의 방법에 의해 센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임용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④센터장은 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에 2회(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⑤직원의 신규임용시 최저연령, 근무상한연령,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의 임기는 근무상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 2항에 따른다.

제7조(직원의 보수) ①센터직원(센터장 포함)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팀장 및 운영요원은 별정직 6급에서 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최초 임용시 [별표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되 센터장은 15호봉, 팀장은 12호봉, 운영요원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직원의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9급에서 5년이상,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센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 직급으로 승진 할 수 있으며, 승진시 1호봉을 감한다.

④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①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징계) ①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겸직제한 및 직권면직) ①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

②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금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후원금 및 수익금

제12조(회계관리)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②센터의 회계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관리) ①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센터장은 당해연도 센터운영에 관한 보조금 예산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확정된 구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조례제 16조에 의거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제16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센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공인관리)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장 직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③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봉사활동 실비지급) ①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 위탁

제19조(센터의 위탁) ①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시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전문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2. 자원봉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등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

④센터의 정관과 인사, 복무 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표6]의 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 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 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라 구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시 책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운영실적 및 사업경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제5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4.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 법인이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일 때

6. 재정 능력 등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7. 지도감독 및 특별감사 등에 불응할 경우

제20조(위탁 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③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등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기관은 [별표7] 의 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명서류 1부
5.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6.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기관은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운영규정) ①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② 1항에 의한 센터내의 별도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의 센터설립,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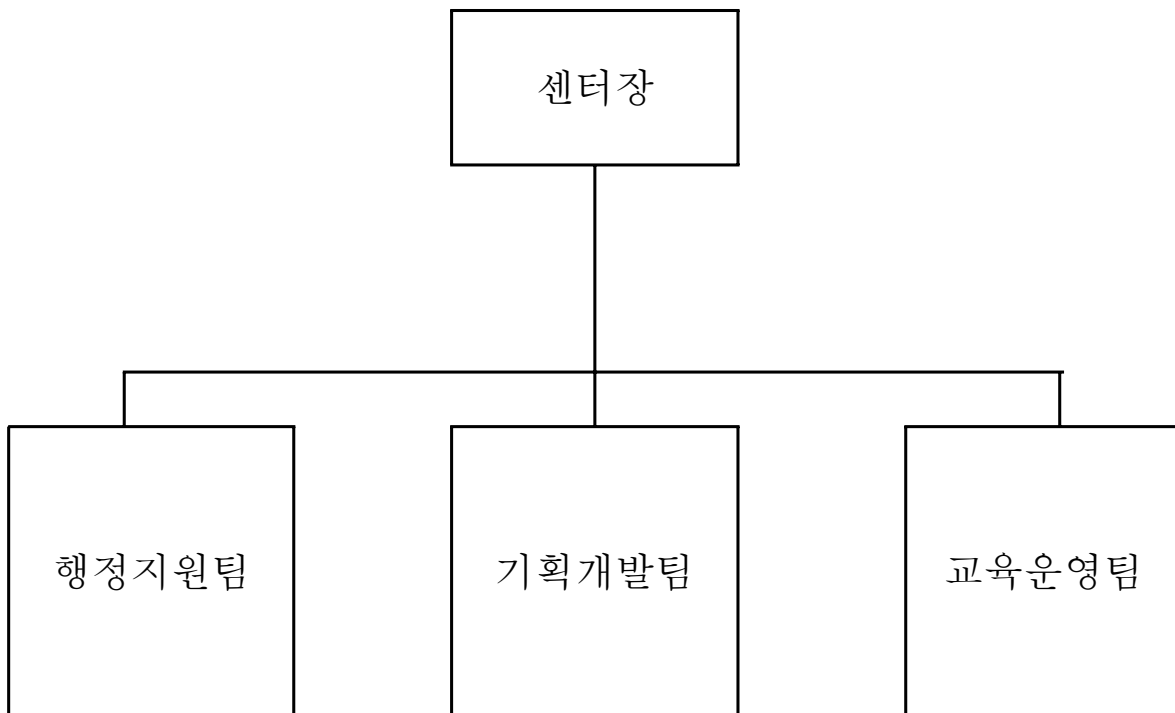
[별표 1]

직원 정원 및 임용 선발 자격(제3조 및 6조 관련)

구 분	인 원	선 발 시 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계	7명			
센터장	1명	서류전형	면 접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급	2명	서류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7급	2명	서류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8급	1명	서류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8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9급	1명	서류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9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제4조 관련)



※ 업무(사무)의 분장은 센터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센터내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3]

경력인정표

구 분	경력 인정 내용	비 고
100%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근무경력 2. 군 복무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시 및 군·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	
80% 적용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외 자원봉사 관련 기관 근무경력(「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 「청소년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 임원 경력	

※ 각 경력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호봉에 반영

[별표 4]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장 직인

2.4cm	2.4cm
인 천 광 역 시 남동구자원봉사 센 터 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2.1cm	2.1cm
인천광역시남동 구자원봉사센터 운 영 위 원 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장 직인

2.1cm	2.1cm
인천광역시남동 구자원봉사센터 인 사 위 원 장 인	

[별표 5]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 남동구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등록자에 한함.	○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 교통비 : 3,000원 이내 - 급식비 : 6,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 실비보상

[별표 6]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소개서 2부. 2.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당해연도 주요사업 계획 2부 5.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2부 6.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7.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2부 8. 서약서 2부	수수료
	없 음

[별표 7]

자원봉사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당해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6.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1부 7. 서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 서 별 의 건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59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3. 02. 21. ~ 2013. 03. 13. (20일 간)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13. 03. 13 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주)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기전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53서3608 (그랜저XG) 외 10대 (내역별첨)
※ 차량 폐차 시 차량내의 유류품도 함께 폐기됩니다.
5. 문 의 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0 ~ 5)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유주		보관장소
	차량번호	차 명	방치장소	성 명	주소	
498	53서3608	그랜저XG	간석동250-1호 간석오피스텔 주차장 내	(주)천경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231번길 12-7	인천폐차사업소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만수2동68-8호 뒤 돌골공원 앞	(주)설립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14	기전폐차사업소
513	인천7로4135	포터	구월1동 팬더@ 정문 앞	김상진	인천 남동구 백범로 157번길 23-4	기전폐차사업소
514	42도7437	SM520	구월1동 팬더@ 정문 앞	강승수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 1길 30	기전폐차사업소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구월4동349-745번지 정방아트빌 앞	(주)유엔비산업개발 (유동수)	서울 영등포구 63로 40, 라이프오피스텔	기전폐차사업소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고잔동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한봉수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 75	서울폐차사업소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고잔동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김성준	인천 중구 도원서길 11	서울폐차사업소
529	38다8879	엘란트라	고잔동184번지 서울폐차사업소 내	URJINBAYARLODOIDA -MAB	서울 금천구 독산로62길 10	서울폐차사업소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만수1동 백범로 101번길(만수1동 구 미소로 옆)	손귀중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 58번길 61-11, 한샘다세대// B02호	인천폐차사업소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구월1동1129-17호 노빌리안오피스텔 주차장 내	안호철	인천 남동구 구월로137번길 39	기전폐차사업소
550	19구3964	소나타2	구월3동1121-1호 화로숯불구이 옆	김정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3	기전폐차사업소

이해관계인 조서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강남구청 (02-2104-2107)	2007.10.16	교통지도과-24545	주정차위반과태료(대경기58마28092007-05-14130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강남구청장	2010.08.26	주차관리과-17530	주정차과태료(2010-02-117695)
529	38다8879	엘란트라	URINBAYARLODOIDA-MAB	압류	강북구청 세무과	2010.03.24	세무과-6449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경기 부천시 소사구(2010-07-10187)	2011.01.14	도시건축과-697	주정차위반과태료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2013.01.04	세무과-129	지방세 체납(2013-031-8075-7116)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경기도 광명시(2002-2680-2592)	2005.08.22	지도민원과-5796	주정차위반 (2015-0278W4000 위반일자2015-03-13)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경기도 광명시(2002-2680-2666)	2005.10.14	지도민원과-7118	주정차위반 (2015-0388W4000 위반일자2015-05-1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경기도 파주시	2011.10.14	환경자원과-8853	대체압류:환경개선부담금(경기91노3965)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경기도 하남시(2003-790-6293)	2005.06.03	교통행정과-12196	주정차위반 (2015-0250W4000 위반일자2014-12-2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경기과주경찰서	2002.05.29	교통63310-1625	속도위반과태료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경기과주경찰서	2004.10.26	경비교통과-5568	교통법규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경기과주경찰서	2004.10.27	경비교통과-5568	교통법규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경기과주경찰서(2003-943-0182)	2003.09.05	교통63310-1284	교통법규위반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철	압류	계양구청교통민원과	2013.02.13	교통민원과-7529	주정차위반과태료(2012-11-00016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고양세무서	2004.01.26	징세46110-485	국세체납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고양시덕양구청(031-961-6280)	2005.09.01	산업교통과-20703	주정차위반과태료()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고양시일산구(900-6297)	2001.07.20	산업91000-13190	주정차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고양시청세정과(031-961-2191)	2004.06.21	세정과-3514	지방세체납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북부지사	2010.03.24	징수부-1176	건강보험료채납()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	2004.08.04	징수1621-957	채납처분에의한 압류등록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군포경찰서(031-397-0112(351))	2003.02.17	교통 63310 - 557	과태료 채납에 따른 압류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군포경찰서(031-397-0112(351))	2003.02.17	교통 63310 - 557	과태료 채납에 따른 압류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군포경찰서(031-397-0112(352))	2003.10.24	교통 63310 - 3993	과태료 채납에 따른 압류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군포경찰서(031-397-0112(352))	2003.12.20	교통 63310 - 4812	과태료 채납에 따른 압류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군포경찰서(031-397-0112(352))	2004.11.18	교통63310-000302	과태료 채납(200471331032898,70000)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군포경찰서(031-397-0112(352))	2005.04.15	교통63310-000078	과태료 채납(200571331000908,70000)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군포경찰서(031-397-0112)	2003.06.10	교통 63310 - 2071	과태료 채납에 따른 압류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군포경찰서(031-397-0112)	2003.06.10	교통 63310 - 2071	과태료 채납에 따른 압류
529	38다8879	엘란트라	URJINBAYARLODOIDA-MAB	압류	김포경찰서(031-983-5000)	2006.01.13	경비교통과-154	도로교통법위반
529	38다8879	엘란트라	URJINBAYARLODOIDA-MAB	압류	김포시차량관리사업소 (031-980-5163)[300000원]	2006.05.29	차량관리-/06003485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채납채납
529	38다8879	엘란트라	URJINBAYARLODOIDA-MAB	압류	김포시차량관리사업소 (031-980-5163)[600000원]	2006.05.29	차량관리-/06003484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채납채납
529	38다8879	엘란트라	URJINBAYARLODOIDA-MAB	압류	김포차량관리사업소(031-980-5170)	2006.05.30	차량관리-2346	정기검사과태료채납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남동구청(032-453-2756)[33000원]	2005.07.28	교통과28331/04011084	책임보험미가입채납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남동구청(032-453-2926)[207000원]	2006.05.19	교통과17968/06003063	의무보험미가입채납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남동구청(032-453-2926)[300000원]	2006.07.04	교통과24304/06006996	의무보험미가입채납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남동구청(032-453-2926)[600000원]	2006.07.04	교통과24304/06006995	의무보험미가입채납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노원구청장	2010.01.11	교통지도과-551	주정차위반,200508-105373,대:경기58마2809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대구광역시북구청장(053-655-3161)	2009.12.10	교통과-48438	주정차위반(2009-043706)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동안구청 031-389-4367	2007.04.10	건축교통과-5193	주정차위반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동안구청장 ☎031-389-4367	2007.02.05	건축교통과-1766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마포구(0231539674)	2009.07.07	교통지도과-16899	주정차위반2009-02-11458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목포시장	2010.03.23	교통행정과-5580	주정차위반,2009-02381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목포시청	2009.08.31	교통행정과-18447	주정차위반(1-2009-010122)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소사구청	2010.01.26	환경녹지과-952	정밀검사와태료(38마7644)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시	2011.03.21	차량관리과13859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체납(고지번호:4290900)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시	2011.03.21	차량관리과13859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체납(고지번호:4291000)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시 원미구	2011.04.07	원미구세무1과-6324	지방세 체납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시장	2010.08.22	차량관리과-45382	의무보험과태료(17679)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시장	2010.08.22	차량관리과-45382	의무보험과태료(17680)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시청 ☎625-4080~3	2009.10.15	도시미관과-31212	주정차위반[2009-01-100245] (대체:53가2754)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시청(53가2754)	2009.10.23	차량관리과-54266	검사이연과태료(7675)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부천원미구청	2009.12.01	환경녹지과-25395	정밀검사와태료(53가2754,1152)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부평구청 교통지도팀	2002.04.19	교행 91180-1882	책임보험과태료체납(대체)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3.02.12	주차지도과-2335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9-00297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저당	삼성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24-2001-001355	2001.04.20	10,000,000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상록구청장	2009.11.13	건설교통과-30612	주정차위반(3-2009-02450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서대문구청 ☎02-330-1485	2006.11.02	교통지도과-15516	주정차위반과태료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서울 강남구	2012.11.12	주차관리과-44174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7-11012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서울 강남구[2010-11-104929]	2011.04.11	주차관리과-11201	주정차위반과태료
545	75서3870	그레이트살롱	손귀중	압류	서울 관악구	2012.12.12	교통지도과-31098	주정차위반과태료[2009-05-101982] (대체:53가2754)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 광진구청 세무2과 Tel)450-1350	2009.03.20	세무2과-6580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 서초구청[2009-01-102879]☎02-2155-7261	2009.07.14	주차관리과-15764	주정차위반과태료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 서초구청[2009-12-103768]☎02-2155-7261	2010.05.13	주차관리과-10529	주정차위반과태료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서울 성동구	2012.03.29	교통지도과-6979	주정차위반과태료[2007-07-10015] (대체경기53마280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서울 성동구	2012.03.29	교통지도과-6979	주정차위반과태료[2007-08-10239] (대체경기53마280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서울 성동구	2012.05.16	교통지도과-6979	주정차위반과태료[2007-08-10019] (대체경기53마2809)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서울 양천구청	2012.08.06	교통지도과-5678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611-10665) 대체38마7644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서울 양천구청	2012.08.06	교통지도과-5678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701-101678) 대체38마7644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서울 양천구청	2012.08.06	교통지도과-5678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702-108608) 대체38마7644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 중구청[2009-02-101151] ☎2260-1466~9	2009.06.12	교통지도과-14583	주정차위반과태료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서울강서구청	2010.03.12	주차관리과-3820	주정차위반(38마7644,200601109118)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관악경찰서(02876-3020)	2010.08.04	교통63310-000803	과태료 체납(112170100010358)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관악경찰서(02876-3020)	2010.08.04	교통63310-000803	과태료 체납(112170100054584)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관악경찰서(02876-3020)	2010.10.18	교통63310-010759	과태료 체납(112170100129351)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관악경찰서(02876-3020)	2010.11.03	교통63310-011481	과태료 체납(112170100152668)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관악경찰서(02885-3021,)	2010.12.02	교통63310-012578	과태료 체납(112170100204048)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서울관악구청	2009.11.11	교통지도과-29102	주정차위반(38마7644,200702101644)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광진경찰서	2009.09.25	경비교통과-8180	도로교통법위반(-200971114007596)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광진경찰서	2009.12.09	경비교통과-10641	도로교통법위반(-200971114012550)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방배경찰서장	2010.12.14	경비교통과-010422	과태료 체납(113370100102710)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방배경찰서장	2010.12.27	경비교통과-10807	과태료체납(113370100100208)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방배경찰서장	2011.02.08	경비교통과-856	과태료체납(113370100101740)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방배경찰서장	2011.02.08	경비교통과-856	과태료체납(113370100119541)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방배경찰서장	2011.02.08	경비교통과-856	과태료체납(113370100128912)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방배경찰서장	2011.02.08	경비교통과-000856	과태료체납에 의한 압류(113370100119541)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방배경찰서장	2011.02.08	경비교통과-000856	과태료체납에 의한 압류(113370100128912)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방배경찰서장	2011.02.08	경비교통과-000856	과태료체납에 의한 압류(113370100101740)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서초경찰서장	2010.04.27	교통과-003084	과태료미납(200971128078428)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울시 관악구청 세무2과	2010.03.25	세무2과-6747	지방세체납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서울시관악구	2010.11.11	교통지도과29446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고지번호: 200702101644.38마7644)(대체 :75서3870)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서울시송파구청	2005.05.09	교통지도반-11395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영등포경찰서	2008.01.24	교통과-000421	도로교통법위반(200771116038301)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영등포경찰서	2008.02.12	교통과-000421	도로교통법위반(200771116038301)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영등포경찰서()	2003.12.16	교통63310-360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0371116032260)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2009.08.14	주차관리과-16195	주정차위반과태료(2009-02-10210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2005.11.09	교지-11963	주정차위반과태료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관리국 환경과	2006.07.14	환경과-486	환경개선부담금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관리국 환경과	2006.12.26	환경과-12951	환경개선부담금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관리국 환경과	2007.07.24	맑은환경과-517	환경개선부담금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환경과	2010.12.13	환경과-2010121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환경과	2011.06.22	환경과-1712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2007.12.27	맑은환경-12407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2006.06.26	맑은환경-15473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2008.12.19	030249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2009.06.22	맑은환경과-14823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2009.12.18	맑은환경과-28709	환경개선부담금 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2010.06.28	맑은환경과-12903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지국 환경과	2012.09.10	환경과-27177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지국 환경과	2013.01.16	환경과-1610(2013.1.16)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2004.01.30	환경과-803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2004.07.15	환경과-7799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2005.01.20	환경과-050120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2005.07.14	환경과-10722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2006.01.19	환경과-1452	환경개선부담금채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	2003.01.24	환경67100-170	2002.2기 자동차분환경개선부담금채납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서초구청 교통운수과 검사팀	2011.01.25	교운91180	정기검사과태료 부과(2010-10-003727)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성남분당구청(건설과)	2003.05.29	건설91110-2319	불법주정차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성동구청	2007.05.03	교통지도과-6701	주정차위반과태료(2007-01-10784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성동구청	2007.05.03	교통지도과-6701	주정차위반과태료(2007-01-10557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성동구청(02-2286-5737)	2007.09.11	교통지도과-14439	주정차위반과태료 채납에의한압류(2007-04-10599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성동구청(02-2286-5737)	2007.09.11	교통지도과-14439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의한압류(2007-04-10689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성동구청(02-2286-5742)	2007.10.09	교통지도과-15769	주정차위반(대:경기58마2809,2007-05-202500)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성북구청 세무2과	2008.09.17	세무2과-17169	2008년1기분 체납자동차세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송파구청	2006.02.03	교통지도반-39219	주차위반과태료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시흥시장 ☎031-310-3467	2007.06.01	교통지도과-9874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 인천30고7361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시흥시차량관리사업소장	2009.10.09	차량관리사업소-34375	주정차위반과태료(288125002259)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안산시 단원구청	2004.09.30	산업교통과-14338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514	42도7437	SM520	강승수	압류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2011.06.09	중부민원-14289/11001356	검사지연과태료체납
514	42도7437	SM520	강승수	압류	여수시청 교통행정과	2012.03.16	교통행정과-16785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1-000042)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연수구청 ☎032-810-7484	2007.05.23	교통행정과-19959	주정차위반[2006-12-101002]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2010.12.24	교통행정과-70639	주정차위반과태료(2010-08-001450)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영등포경찰서	2008.01.28	교통과-421	속도위반(200771116038301)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영등포경찰서(2678-5659)	2005.05.30	교통과-3403	도로교통법위반(200571116002342)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2005.08.30	교행-26836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2005-003757)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2006.04.19	교통행정과-14795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2006-001902)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370-3875)	2004.02.26	교행91180-4280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2003-009372)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영등포구청 세무과	2010.03.15	세무과-3781	지방세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2004.01.05	교행91170-62	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2003-004241)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영등포구청환경과(022670-3462)	2005.10.24	환경과-17112	정밀검사과태료(2005-005716)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원주시장	2010.11.11	교통행정과-43787	주정차 위반(288125001755)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의왕시 교통행정과[300000원]	2006.02.16	교행-3156/05006813	책임보험과태료체납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의왕시 교통행정과[300000원]	2006.03.27	교행-6244/05002173	검사지연과태료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의왕시장	2006.06.29	교통행정과-14086	주정차위반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의왕시청 (2004-002700)	2004.10.20	교통행정과-14929	자동차책임보험위반 압류금액:300,000
527	경기39거5729	엘란트라	한봉수	압류	의왕시청 세무과	2003.03.17	세무13410-10292	지방세체납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 남동경찰서 (전화02-43-5111)	2002.01.19	교통63340-146	속도위반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 남동구 교통과 (전화02-43-2767)	2000.10.24	교통91110-13527	주정차위반과태료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인천 남동구청	1996.05.10	징수13410-2790	자동차세체납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 남동구청	2011.06.15	자동차관리과-22732	자동차검사과태료 체납 압류(고지번호000438-00)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인천 남동구청	2012.11.01	자동차관리과-49236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003666-00)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인천 남동구청	2006.09.19	환경위생과-22743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 남동구청 (교통과 ☎032-453-2750)	2001.08.16	교통91180-11982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 남동구청 ☎032-453-2766~7	2000.06.22	교통91110-7617	주정차위반과태료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 남동구청 교통과 ☎032-453-2766~7	2000.12.08	교통91110-15717	주정차위반과태료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인천 남부경찰서 (전화02-43-5111)	2001.12.24	교통63340(신)-5643	도로교통법위반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 남부경찰서 (전화02-43-5111)	2001.12.04	교통63340(신)-5280	도로교통법위반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 남부경찰서 (전화02-43-5111)	2001.12.04	교통63340(신)-5280	도로교통법위반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광역시	1999.05.01	교기91000-843	주차요금체납압류(T.579-2701)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	2003.05.13	주관91000-1074	주차요금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	2003.08.14	주관91000-2188	주차요금체납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광역시	2007.03.19	교통관리과-3231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체납(2006-12-100917)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	2009.04.27	세정과-10421	지방세체납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032-450-5689	2008.03.03	교통행정과-8252	주정차위반[2007-11-103377]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02-43-291)	2004.03.22	교통91000-8440	주정차위반과태료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880-4511,7367,7368	2008.02.21	교통91000-6372	주정차위반[2007-11-104327]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2.09.10	세무과-22714	지방세 체납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02-43-291)	2008.10.20	주차관리과-15534	불법체납자 과태료체납(2008-06-006773)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02-43-291)	2008.10.20	주차관리과-15534	불법체납자 과태료체납(2008-06-002230)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	2005.12.27	환경위생과-27271	환경개선부담금체납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0.08.31	자동차관리과-36323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8792-00)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0.08.31	자동차관리과-36323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8793-00)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02-43-291)	2009.11.28	자동차과-45430/09005168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2.11.05	교통행정과-21608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8-002521)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1.02.15	교통행정과-2310	주정차위반과태료(2010-11-002597)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4.07.12	교통과-1934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1.11.09	주차지도과-18972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6-003048)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1.11.09	주차지도과-18972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7-003369)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청 (02-50-420)	2007.06.19	세무과-10861	지방세체납에 따른 압류등록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02-80-738)	2010.02.18	교통민원91000-6661	주정차위반(2009-100763)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02-80-738)	2010.02.18	교통민원91000-6661	주정차위반(2009-201360)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02-43-291)	2003.01.09	교통91110-35	주정차위반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02-43-291)	2003.01.09	교통91110-35	주정차위반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02-59-200)	2004.02.03	교통421-48	주차요금 체납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장	2003.11.08	부관91000-2983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록
521	서울48도7436	코란도	(주)유엔비산업개발	압류	인천광역시장	2006.08.30	교통관리과-10281	버스전용차로 위반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장	2010.06.17	교통관리과-8959	버스전용차로위반(2010-02-000629)
550	19구3964	소나타2	김정설	압류	인천광역시장	2010.06.17	교통관리과-8959	버스전용차로위반(2010-02-000747)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광역시청 (교통지도과 ☎032-440-6677)	2001.08.30	교지91100-1840	버스전용차로위반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광역시청 T.440-6677-9	1999.08.27	교지91100-1880	버스전용차로위반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광역시청 T.440-6677-9	1999.08.27	교지91100-1880	버스전용차로위반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광역시T.440-6677/9	1999.12.01	교지91100-1317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체납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인천남동구청	2009.10.05	환경과-24460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체납(001852-00)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남동구청	2009.09.15	세무1과-18775	지방세체납()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인천남동구청	2005.02.23	환경위생과-3276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인천남동구청 세무과(453-2299)	2004.10.05	세무과-21275	지방세체납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인천남동구청 교통과	2004.02.05	교통-2947	불법주정차위반(200212054167)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인천남동구청교통과(032-453-3972)	2004.12.30	교통과-41616	검사지연(190,000원)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남동구청교통과(453-2897)	2006.06.22	교통과-22422	주정차위반과태료(200512000454)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인천남동구청교통과[300000원]	2006.05.18	교통과-17805/06001436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체납
547	인천2도1087	캐피탈	안호철	압류	인천남동구청세무과(032-453-2299)	2003.10.21	세무13410-3696	지방세체납()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인천남동구청 차량관리팀	2008.06.03	교통과-18633	의무보험미가입체납(007661-00)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인천남동구청 차량관리팀	2008.06.03	교통과-18633	의무보험미가입체납(007662-00)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동구청 ☎032-770-6508	2007.06.20	환경위생과-11503	환경과태료체납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서구청(032-560-5926)	2008.05.14	환경보전과-12398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000329-00)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시 남구청 교통과	2002.12.20	교통91000-6203	주정차위반과태료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인천시연수구	2010.12.27	교통행정과70738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번호:201008001450.)
513	인천7로4135	포터	김상진	압류	인천시청 ☎032-440-6677	2000.08.24	교지91100-3117	버스전용차로위반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중구청	2008.09.24	세무과-13005	지방세 체납()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중구청(☎760-7677) [300000원]	2008.08.13	교통-31363/08002970	정기검사(점검)지연체납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중구청(032-760-7568) (인천31년1642)	2007.08.28	28469	불법주정차과태료(200703101304)
528	인천3거9119	세피아	김성준	압류	인천중부경찰서(032-761-4232)	2005.01.10	경비교통과-107	도로교통법위반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인천차량등록사업소	2003.09.23	차량91153-1993	검사지연(300,000원)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종로구청	2004.07.27	교통지도과-11858	버스전용차로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종로구청(02-731-1671)	2007.09.12	교통지도과16844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의한압류(2007-04-20803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중랑구청 ☎02-490-3833	2007.11.09	교통지도과-19658	주정차위반(대:경기58마2809,2007-07-20211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2.08.06	교통63310-2340	교통법규위반과태료체납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5.03.09	경비교통과-872	교통법규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5.05.12	경비교통과-2132	교통법규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5.09.14	경비교통과-4984	도로교통법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6.01.09	경비교통과-110	도로교통법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6.01.09	경비교통과-110	도로교통법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6.07.07	경비교통과-5227	도로교통법위반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7.01.31	경비교통과-740	도로교통법위반(20067130701494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7.02.28	경비교통과-001579	도로교통법위반(20067130703943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7.05.01	경비교통과-3605	도로교통법위반(20077130700028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9.03.10	경비교통과-002166	도로교통법위반(20087130703295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9.05.26	경비교통과-529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5030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9.05.26	경비교통과-529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5654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9.05.26	경비교통과-529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4998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9.06.18	경비교통과-6338	도로교통법위반(20087130706364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9.10.06	경비교통과-010200	과태료체납(20097130702160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09.10.06	경비교통과-010200	과태료체납(20097130702162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1.04.22	경비교통과-331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5655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1.04.22	경비교통과-331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4917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1.04.22	경비교통과-331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4910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1.09.15	경비교통과-17470	도로교통법위반(13077011013280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1.09.21	경비교통과-18402	도로교통법위반(13077011011390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1.09.21	경비교통과-18402	도로교통법위반(13077011009319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1.10.26	2011D1307024234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7011023768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1.12.21	2011D130702905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7011086317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2.01.09	2012D130700049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7011043394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2.01.26	2012D1307001594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7011043864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2.01.26	2012D1307001680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7011041672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2.02.07	2012D1307002474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7011047446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2.02.22	2012D1307003460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7011052555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2.03.28	2012D130700649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7011053619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2.04.10	2012D1307007822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011061988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	2012.04.10	2012D1307007863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7011061272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7.08.31	경비교통과-007747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채납(200771307021600)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7.09.11	경비교통과-008007	도로교통법위반(20077130702739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1.11	경비교통과-000262	도로교통법위반(20077130704150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3.06	교지-4416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771307051360)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3.06	교지-4416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77130704933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3.17	경비교통-2130	도로교통법위반대채압류(20077130703901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4.07	경비교통과-2966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77130705866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5.06	자격징수부1008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0553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5.26	경비교통과-474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0784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5.26	경비교통과-4741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07820)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6.18	경비교통과-559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1092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7.14	경비교통과-006746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1520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031-943-0182)	2008.08.04	경비교통과-75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20087130701767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2106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957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930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0901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823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796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794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20130)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690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688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0199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0696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549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544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587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485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0904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21	경비교통과-012597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1431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30	경비교통과-012998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3431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30	경비교통과-012998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3121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09.12.30	경비교통과-012998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2293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0.06.22	경비교통과-005563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2372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0.06.22	경비교통과-005563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4146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0.06.22	경비교통과-005563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4701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0.06.22	경비교통과-005563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6831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0.07.12	경비교통과-006350	도로교통법위반(20097130707299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1.17	경비교통과-000415	과태료체납(고지번호:13077010041467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2.16	경비교통과-001229	도로교통법위반(고지번호:13077010042555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2.16	경비교통과-001229	도로교통법위반(고지번호:13077010041072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03	경비교통과-001701	도로교통법위반(고지번호:13077010049637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03	경비교통과-001701	도로교통법위반(고지번호:13077010044850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3109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3081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3088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955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823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822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670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556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359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294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020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1977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1937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1908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49842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49172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4030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3922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3.17	경비교통과-13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3199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4974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4946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4918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990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9660)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9208)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4633)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2019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1953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19517)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4.05	경비교통과-1564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130770100517395)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08.31	경비교통과-16463	도로교통법위반(130770110095096)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10.19	경비교통과-21084	도로교통법위반(130770110209369)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경찰서장	2011.10.19	경비교통과-21084	도로교통법위반(130770110198024)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파주시	2009.07.14	도시미관과-15029	주정차위반200903102292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시 세무과	2002.01.15	세무13410-241	지방세 체납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시 차량사업소	2011.07.12	파주시차량사업소-17959	손배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201100390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시 차량사업소	2011.07.12	파주시차량사업소-17959	손배법위반과태료(고지번호:2011003905)
545	75서3870	그레이스살롱	손귀중	압류	파주시장 ☎031-940-4781	2009.11.11	도시미관과-24877	주정차위반[2009-03-102470] (대체:53가2754)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시차량등록	2006.02.09	교통정책과-3392	검사과태료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시차량사업소	2009.03.11	파주차량사업소-4995	의무보험위반과태료(4995/08021170)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시차량사업소	2009.03.11	파주차량사업소-4995	의무보험위반과태료(4995/08021171)
498	53서3608	그랜저XG	(주)천경	압류	파주시청 징수과	2008.01.25	징수과-690	지방세 체납
507	인천3로1687	소나타2	(주)설립	압류	한국도로공사경기지역 본부장 ☎02-2225-8473	2007.09.28	도로영업팀-2054	고속도로통행료미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6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에이즈 및 성병예방 물품 구입
- 나. 구입물품 : 에이즈진단시약 외 6종 (붙임 규격서 참조)
- 다. 설계금액 : 22,300,080원
- 라. 입찰방법 : 견적입찰, 총액입찰
- 마.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 사. 납품조건 : 의약품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이상
※ 단, 사용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유통기한이 1/2이상
- 아.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3. 02. 21(목) 14:00 ~ 2013. 02. 25(월) 14:00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02. 25(월) 15: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차. 발주부서 및 담당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함양애(☎032-453-5136)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입찰방식

- 가. 본 견적은 총액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의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03.22)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일가격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함양애 (☎ 453-5136)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우리구 재무과 최현철(☎ 453-2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6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2013년도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물품 구입
- 나. 구입물품 : 수송배지외 44종 (붙임 규격서 참조)
- 다. 설계금액 : 24,998,240원
- 라. 입찰방법 : 견적입찰, 총액입찰
- 마.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 사. 납품조건 : 의약품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이상
 ※ 단, 사용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유통기한이 1/2이상
- 아.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3. 02. 21(목) 13:00 ~ 2013. 02. 25(월) 13:00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02. 25(월) 14: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차. 발주부서 및 담당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함양애(☎032-453-5136)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입찰방식

- 가. 본 견적은 총액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의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03.22) 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일가격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함양애 (☎ 453-5136)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우리구 재무과 최현철(☎ 453-2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2.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외 바람직한 공동주택 문화개발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등

나. 공용시설 관리 지원 사업 내용 추가 및 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2호)

○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확대

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4.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

○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제4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92, FAX 453-27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외 바람직한 공동주택 문화개발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안 제4조제1항제1호)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등
- 공용시설 관리 지원 사업 내용 추가 및 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2호)
 -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확대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안 제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신설

☐ 본 문 :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 별첨 ”☐ 참고자료

- 「주택법」 제43조제8항
-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를 “제43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활성화” 로, “규정함 ”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법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제외 한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바.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포장

나.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다.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라.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안내표지판, 보안등,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등)의 유지·보수. 다만,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자전거 공기 주입기 포함)의 경우에는 신설을 포함한다.

마. 주차시설(스토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포장으로 인한 주차면 도색에

한한다)보수

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사. 다세대주택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 1 (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 따르며, 각 공동주택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 의결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원받은 관리주체는”을 “지원결정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착수 내용에 대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개시(착공)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통보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조 제3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제9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업완료(완공)보고서(별지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산서”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3조제8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활성화 ----- -----정 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4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
<신설>	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제외 한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바.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포장	제59조제1항 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3.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포장 나.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다.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4.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안내표지판, 보안등,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등)의 유지·보수. 다만,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자전거 공	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기 주입기 포함)의 경우에는 신설을 포함한다. 5. 주차시설(스토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포장으로 인한 주차면 도색에 한한다)보수 6.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신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보조금은 사용검사(준공인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안내표지판, 보안등,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등)의 유지·보수. 다만,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자전거 공기 주입기 포함)의 경우에는 신설을 포함한다. 마. 주차시설(스토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포장으로 인한 주차면 도색에 한한다)보수 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사. 다세대주택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 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입주자 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제>
---	---

③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공동주택별로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각 공동주택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 1 (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 따르며, 각 공동주택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②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② 제4조제1항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사본 1부	-----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 의결서-----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지원결정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착수 내용에
<신설>	에 대하여 -----

	1. -----개시(착공)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2. 보조사업을 완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완료(완공)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조사업을 완료(완공)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산서
별지 제1호서식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별지 제4호서식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구 분 담 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70	3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 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70	30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0	30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70	30	
5.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구 분 담 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 포장	50	50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50	50	
3.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50	50	
4.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안내표지판, 보안등,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등)의 유지·보수. 다만,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자전거 공기 주입기 포함)의 경우에는 신설을 포함한다	50	50	
5. 주차시설(스토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포장으로 인한 주차면 도색에 한한다)보수	50	50	
6.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경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50	50	
7. 다세대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 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	50	5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비고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1천만원(전체사업비)×70%(자치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0%(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액 10%)]=8백40만원 |
|---|

나. 공용시설물 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제4조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 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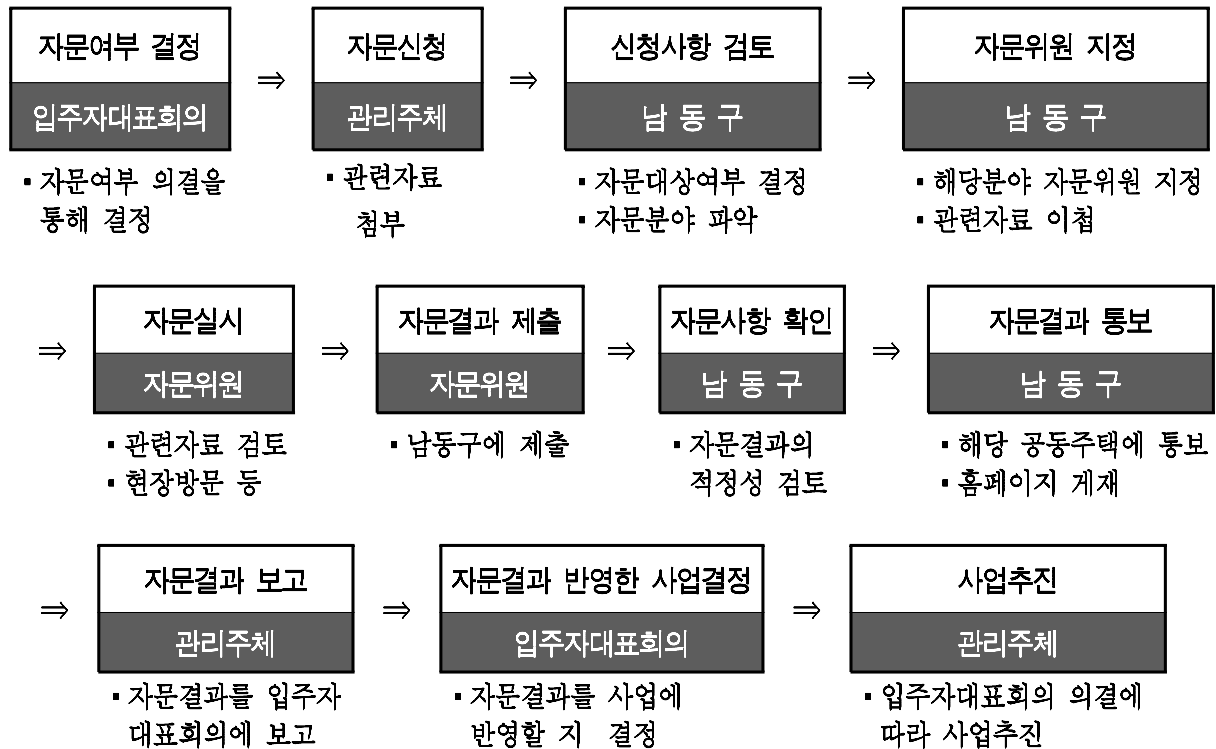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뒷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1개월

□ 자 문 료 : 무료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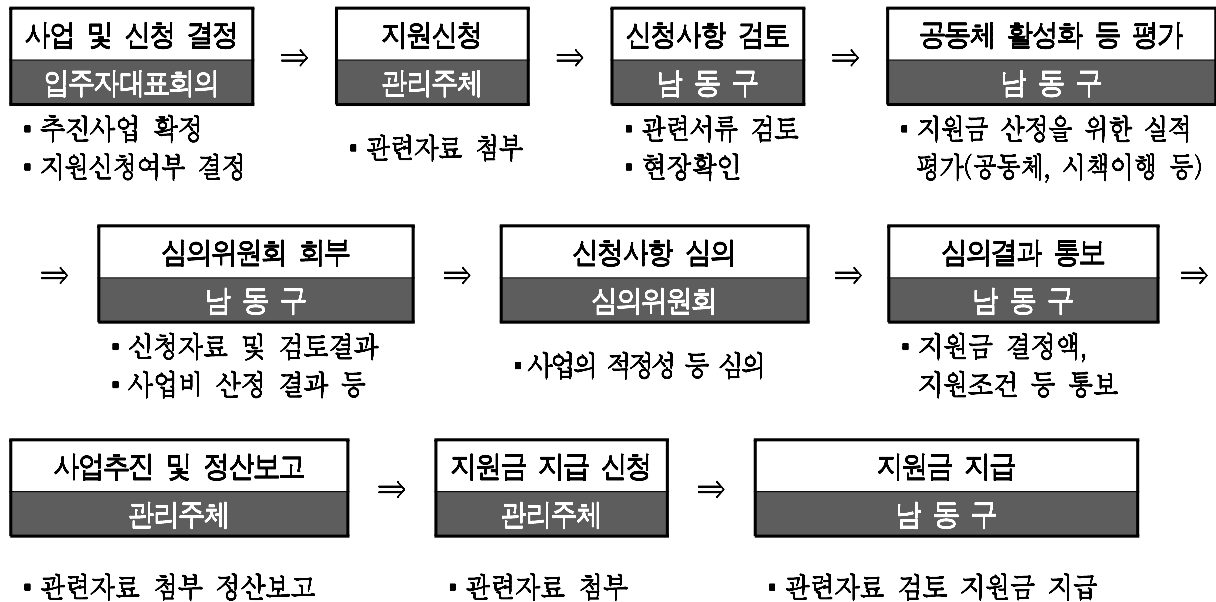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뒷면)

□ 처리절차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총 사 업 비 :
- 산 출 내 역 :

☐ 사 업 내 용

-
-
-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	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 약 금 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 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 번지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	총 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연장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에
해
부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도시관리국 건축과장 조 병 운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66호

행정대집행 고 고서

성명 : 장도포대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무단적치물의 소유자 귀하
주소 : 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2-1896호(2012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213호(2013.1.30)로 귀하 소유의 아래 적치물을 2013년 2월 18일까지 자진하여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으나 2013년 2월 21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경관 유지에 지장을 주고 있어 방치하는 것은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3년 3월 13일까지 반드시 적치물을 철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및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지정 문화재자료 장도포대지 문화재보호구역 논현동 179-57 외 2필지	의자 2개 테이블 2개 돗자리 1개 천막 1개 나무레깅 1개 자물쇠 1개	적치물의 철수 및 처분

2013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67호

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온-나라 시스템 구축
 나. 산 출 내 역 : 불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 초 금 액 : ₩422,228,000
 라.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
 마. 납 품 장 소 : 남동구청 지정장소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3. 02. 21\(목\) 15:00 ~ 2013. 02. 28\(목\) 15: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02. 28\(목\) 16: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발주부서 및 담당자 : [정보미디어과 백상현 \(☎032-453-2125\)](#)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료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으로 [등록 신고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계약자는 납품 물품의 제조사가 아닐 경우 계약 후 10일이내에 [제조사](#)

발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전산기 제조사의 기술자격증(2인 이상)과 오라클 기술자격증(1인 이상)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40억원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 2012. 12.24)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 동등이상물품 : 온나라 시스템

- 유사물품 : 해당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규등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smpp.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계약체결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우리구에서 송신한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미디어과(032-453-2125 백

상현)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재무과(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2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2.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으로 도시관리공단 내 감사의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결산 기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비상임 감사 임명기준 개정(안 제10조제1항)
 - 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 나. 결산기간 개정(안 제28조제1항)
 - 3월내 → 2개월 이내
-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4.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4,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으로 도시관리공단 내 감사의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결산 기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공단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비상임 감사 임명기준 개정(안 제10조제1항)
 - 감사실장 → 기획예산실장
- 상위법령에 따른 결산기간 변경(안 제28조)
 - 3월내 → 2개월 이내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비상임 감사 임명기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하여”는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임·직원의 겸업금지)”를 “(임직원의 겸업금지)”로 한다.

같은 조 본문 중 “구청장의”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의해”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지방공기업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한”을 “법 제66조의2의”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를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기업법</u>」 제 76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u>추천한 자</u>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이사) ① (생략)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u>감사실장</u>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u>구청장의</u>,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생략)	제1조(목적) ----- 「<u>지방공기업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 제4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제8조(이사장) ① ----- -----<u>추천한 사람</u>----- 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따라</u>----- 제10조(감사) ① -----<u>기획예산실장</u>----- -----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 ----- -----<u>구청장,</u>-----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 구의 부구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제24조(대행사업 및 비용부담)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예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감독) ① (생략)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제24조(대행사업 및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 ----- ③ -----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은 ----- ----- ----- ----- 제27조(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라 ----- ----- 법 제66조의2의 ----- ----- ----- ⑤ 제4항에 따라 ----- ----- ----- ----- 제28조(결산) ① ----- -----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 내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은 ----- -----

현행	개정안
1~3. (생략)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생략)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u>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u>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u>-----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윤 인 석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71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비영리법인·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 정원	개원예정일	취약보육
가칭)향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논현동 733-103	연면적: 500㎡(지상2층) / 88명	6월	24시간반 편성 외 1
가칭) 아름드리어린이집	간석동 939-1	84㎡ / 20명	5월	영아전담반 편성 시간연장반 편성
가칭)서창휴먼시아 어린이집	서창동 서창LH11단지	279㎡ / 60명	5월	시간연장반 편성 외 1

※ 보육정원은 내부시설 설치 후 보육실 면적 및 배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3.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13. 2. 22 ~ 3. 14
- 접수기간 : 2013. 3. 15 ~ 3. 18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팀 (1층)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인터넷·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① 위탁운영신청서(위탁운영개요서 포함)

② 위탁운영체 현황

③ 위탁운영체 평가자료

- 신청서류 ①, ②, ③번호순으로 1권의 책으로 제본(A4 규격)하여 15권 제출 (원본 1권, 사본 14권 제출)
-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 기준일로 발급

4. 신청 자격 요건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인의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단, 고용원장은 제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6.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자 선정 기준 : 【붙임 2】 참조

심 사 항 목	배 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40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운영의지 등)	35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운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운영체의 재정능력(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8. 수탁자 선정 방법 및 통지

-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 신청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발표자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1개 시설에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0조에 의거)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

으로 함.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원장의 전문성(1순위), 어린이집 운영계획(2순위), 시설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9. 유의사항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로 협약할 수 있음
-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민간어린이집의 종사자(고용 원장포함)인 경우 그 직을 사임하고 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팀 담당자(☎ 032-453-58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위탁심사 평가기준안

붙임 2.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 불입 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10 7 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10 8 6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 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공신력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합 계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1차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20)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16)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12)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10)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8)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6)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10)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8)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6)

②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참여하여 통과

- (10)
- 참여(중) ------(7)
- 미참여 ------(3)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 | | | | | | | |
|--------------|-----|------|----|-----|-----|----|--------|
| - | 보육등 | 아동복지 | 업무 | 경력이 | 10년 | 이상 | |
| ------(10) | | | | | | | |
| - | 보육등 | 아동복지 | 업무 | 경력이 | 5년 | 이상 | 10년 미만 |
| ------(8) | | | | | | | |
| - | 보육등 | 아동복지 | 업무 | 경력이 | 3년 | 이상 | 5년 미만 |
| ------(6) | | | | | | | |

※ 경력인정 :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5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③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④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
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⑤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 ~ 5억 미만인 경우
----- (4)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

〈단체·개인의 경우〉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

----- (4)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불입 2 】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구 분	서류 항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평가 등)				

【 서식 1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8>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 1-1 】

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요서

법인/단체/개인명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주요경력		
설립일자					등록청	
법인현황	설립목적					
	주요사업				연간사업비	천원
	2012년 재정내역	총사업비	사업수입	외부자원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총자산규모	동산	부동산	부채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운영		운영기간	보육아동 수	원장확보	
	유	무			유	무
기타어린이집 관련수행실적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주요경력		
출연금	연간 천원					
비고						

【서식 2】

위탁운영체현황(법인,단체용)

1. 일반현황

법인(단체)명			
사업소재지		전화번호	-
설립일자		지부/구성원	
주요사업내용			
재 산 액	【부동산 : 총 천원】 【동 산 : 총 천원】		
위탁신청동기 (취지)	여백부족시 별지사용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 허가증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첨부(법인의 경우)

※단체 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첨부(단체의 경우)

※2009년~2012년 법인(단체) 총괄 예산 결산서

※재산액은 9번항의 재산현황과 금액일치

2. 설립목적 및 정관상 목적사업

3. 대표자 및 원장 인적사항

가.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격증	주 요 경 력	학 력 (학과명)
(한자)					
(한글)	(만 세)				

※ 첨부 : 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나.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격증 (취득년도)	주요 경력	학력 (학과명)
(한자)					
(한글)	(만 세)				

※ 첨부 : 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다. 원장(내정자)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경력현황

시설명	직	유형	경력	종사기간	소재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민간	1년 2개월	2007.1.1 ~ 2008.2.28	○○시 ○○구
○○유치원	보육 교사	민간	2년	2005.1.1 ~ 2006.12.31	○○시 ○○구

※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4.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취임일자	연락처
대표이사					
이사					
감사					

5. 2009년 ~ 2012년 주요사업(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실적(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사업성과

나. 우수한 사항 (표창, 공모사업 수상 등)

연 월 일	내 용	시행기관	비 고
2010.2.24	표창내용 간략 표기	국무총리	

※ 표창,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표창장 등 관련서류 첨부

다.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2009. 1. 1 ~ 2012.

12. 31)

연 월 일	수감 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행기관

라. 기타사항

-
-

6. 설립일자 및 연혁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내 용

7.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부서

○ 조 직 도

○ 운영부서 및 직원현황

8. 재산보유 현황**가. 총 계**

(단위 :원)

금융기관	평 가 액	부 채 액	비 고
계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 부동산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나. 동산(현금)

(단위 :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잔 액	비 고
계			

※공고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첨부

다. 부동산(토지)

(단위 :원)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재산액 (면적 × 공시지가)	담보액 (근저당 등)	비 고
계							

※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라. 부동산(건물)

(단위 :원)

지번	용도	면적 (㎡)	지방세 과표	평가액	담보액 (전세,근저당 등)	비고
계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마. 부채 현황

(단위 : 원)

연번	금융기관	부채액	비고

※부채증명원 등 서류 첨부

위탁운영체 현황[개인용]

1. 원장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자격증 내용	최종학력 (학과명)	주요경력
(한자)					
(한글)	(만 세)				

※ 첨부 : 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2. 원장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경력현황

시설명	직	유 형	경 력	종사기간	소재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민간	1년 2개월	2007.1.1 ~ 2008.2.28	
○○유치원	보육 교사	민간	2년	2005.1.1 ~ 2006.12.31	○○시 ○○구

※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3. 위탁신청동기(취지) :

4. 재산보유 현황

가. 총 계

(단위 :원)

구 분	금융기관	재산평가액	재산적용액	부 채 액	비 고
계					
본인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배우자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부동산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나. 동산(현금)

(단위 :원)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잔 액	재산적용액	비 고
	계				
본인					
⋮					
배우자					
⋮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적용하여 기재**

※ 공고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다. 부동산(토지)

(단위 :원)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재산액 (면적 × 공시지가)	재산적용액	담보액 (근저당 등)
	계							
본인								
⋮								
배우자								
⋮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적용하여 기재**

※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라. 부동산(건물)

(단위 :원)

구분	지번	용도	면적 (㎡)	지방세 과 표	평가액	담보액 (전세,근저당 등)	재산적용액
	계						
본인							
⋮							
배우자							
⋮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마. 부채 현황

(단위 : 원)

구분	금융기관	부채액	비고
본인			
⋮			
배우자			
⋮			

※부채증명원 등 금액 확인 서류 첨부

5. 2009년 ~ 2012년 표창, 공모사업 수상(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실적

(2009. 1. 1 ~ 2012. 12. 31)

연 월 일	내 용	시행기관	비 고
2010.2.24	표창내용 간략 표기	국무총리	
⋮	⋮	⋮	⋮

※ 표창,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표창장 등 관련서류 첨부

【 서식 3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

재산 및 부채현황		
①건 축 물	☐ 주택 (천원) ☐ 건물 (천원) ☐ 기타 (천원)	재산총액 천원
②토 지	☐ 논 (천원) ☐ 밭 (천원) ☐ 임야 (천원) ☐ 기타 (천원)	
③금융자산	☐ 예금 (천원) ☐ 보험 (천원) ☐ 현금(천원)	
④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천원) ☐ 상가보증금(천원) ☐ 기타(천원)	
⑤자 동 차	☐ 차종(천원) ☐ 연식(천원) ☐ 배기량(천원) ☐ 평가액(천원)	부채총액 천원
⑥부 채	☐ 주거부채(천원) ☐ 의료부채(천원) ☐ 사업부채(천원) ☐ 일반부채(천원) ☐ 교육비부채(천원) ☐ 기타부채(천원)	
⑦총 계	(재산총액 천원) - (부채총액 천원) = 천원	

경비의 지급 및 변제 계획		
①월 소 득	☐ 근로소득(천원) ☐ 사업소득(천원) ☐ 기타소득(천원)	소득총액 천원
②지 출 액	☐ 생계비(천원) ☐ 의료비(천원) ☐ 주거비(천원) ☐ 교육비(천원) ☐ 교통비(천원) ☐ 공과금(천원) ☐ 차량비(천원) ☐ 기 타(천원)	지출총액 천원
③경비지급	☐ 어린이집 운영비 등 경비의 발생예상액 월평균 : 천원 (세부내역작성 :)	경비총액 천원
④변제금액	☐ 부채상환금 발생예상액 월평균 : 천원 ※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변제총액 천원
⑤경비지급 및 변제계획	상세내용기재	

상기와 같이 본인의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2013 . . .
작성자 (서명)

【 서식 4 】

위탁운영체 평가자료 서식

원장의 보육사업 종사 경력

○ 원장의 주요 경력사항

구 분	근무처 및 기간	근무경력
보육사업 분야	○○어린이집(2007.1.1 ~ 2007.12.31)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년 개월
⋮		년 개월
유치원 분야		년 개월
⋮		년 개월
아동복지 분야		년 개월
⋮		년 개월
사회복지 분야		년 개월
⋮		년 개월

※ 경력인정 : 원장은 100% 인정,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종사자는 70%만 인정

※ 원장의 이력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원장 자격증 등 첨부

○ 원장의 평가인증 참여 여부

평가인증일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
-

※ 위탁운영 신청자(원장)가 어린이집 재직기간 동안 평가 인증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괄호안에 체크

※ 참여하여 통과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첨부, 참여중일 경우 참여중인 증빙서류 첨부

원장의 학력 및 전공

○ 원장의 학력 기재

원장 성명	생년월일	구 분	학교명	학과명	졸업일자
홍길동	1967.1.5	전문대학(2년)	명지대학교	보육학과	2000.1.15
		⋮	⋮	⋮	⋮

※ 구분 : 전문대학(2년), 대학교(4년), 대학원, 교육원 등 기재

※ 기재한 졸업 학교 졸업증명서는 모두 첨부

재산 현황

가. 법인/단체용

(단위 : 원)

금융기관	평 가 액	부 채 액	비 고
계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나. 개인용

(단위 : 원)

구 분	금융기관	재산평가액	재산적용액	부 채 액	비 고
본인	계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배우자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일 경우는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거주사항

○ 인천시 거주 여부 확인

※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일/등록일로 산정, 법인 설립허가증 및 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 개인의 경우 인천시 거주기간 산정,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이 나타나도록) 첨부

어린이집 운영 계획 (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 시설 운영 방향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목 표		
기본방향		
프로그램 내용		
기 타		

○ 사업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계	수입액	지출액	기 타
계				
주요사업만 기재				

○ 특색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 취약보육 운영계획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 2013년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첨부

- 기본운영 방침, 보육계획(연간, 연령별, 급간식, 특수(색)사업, 취약보육 등)
- 조직 및 인력관리계획(직원수급 및 인력관리 계획)
-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계획
-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계획 등

위탁운영자(대표자 또는 원장)의 보육마인드

- 시설 운영, 보육 신념 등 의견 개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72호

공인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인 폐기 사유 : 인증기 폐기
- 공인의 폐기일 : 2013. 2. 22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폐기(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세무과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2동장전용)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
폐 기 공 인	만수2동장인 (만수2동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서창동 공고 제2013-12호

통 장 위 축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해축)제2항에 따라 위축된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축일자 : 2013. 03. 02(토)

2. 통장위축자

통명	통 구 역	통 장 위 축 자		비고
		성 명	주 소	
7통	태평1차아파트 101동 ~ 102동	이미향	남동구 장아산로128번길 22, 101-1205 (서창동, 태평아파트)	
8통	태평1차아파트 103동 ~ 105동	황을연	남동구 장아산로128번길 22, 105-802 (서창동, 태평아파트)	
10통	태평2차아파트 203동 ~ 205동	강경희	남동구 장아산로 181, 205-1903 (서창동, 태평아파트)	
11통	태평2차아파트 206동	전영자	남동구 장아산로 181, 206-2005 (서창동, 태평아파트)	
21통	장수주공아파트 104동 ~ 106동	이효임	남동구 장수로 27, 106-501 (장수동, 주공아파트)	

3. 문 의 처 : 장수서창동 주민센터(☎453-5507)

2013. 2. 22 (금)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서창동장